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윤덕·임오경·신영대

최민희 • 문진석 • 강유정

이원택 • 이연희 • 이건태

홍기원 · 김교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 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 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 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 또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28조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 조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
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
	<u>자는 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u>
	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
	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
	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 또
	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여야
	<u>한다.</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2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허가 · 등록취소 또 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 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 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 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 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 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 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u>게</u>	
임물 관련사업자가 제28조제5	
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